

13~14세기 英國農民의 社會經濟的 地位

-Cuxham 莊園을 중심으로-

金 豪 然*

- | | |
|--------------------------|---------------------|
| I. 머리말 | IV. 貧農(cotager)의 地位 |
| II. 自由農(free tenant)의 地位 | V. 맺음말 |
| III. 慣習地保有農(villein)의 地位 | |

I. 머리말

Cuxham장원은 남부 미들랜드 지역인 Oxfordshire에 위치한, 촌락과 장원의 경계가 일치하는 단일 장원촌락이다.¹⁾ 이 장원은 이미 Domesday시대에 촌락 주변의 개간이 끝나²⁾ 그 후로는 촌락의 경작지 면적에 변동이 없었던 비교적 오래된 장원이다. 원래 이 장원은 세속 개인의 봉토였던 것이 1271년 Merton College에 기증되어 그후 Merton College의 소유 하에 남게 되었다.³⁾

Cuxham장원을 기증받아 영주가 된 Merton College는 장원의 농민들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장원관리인(bailiff, reeve)⁴⁾을 임명하여 그 장원을 직접 경영하였다. 장원관리인들은 장원에 대한 경영내용을 회계보고서(Manorial Account Rolls)를 통하여 매년 영주에게

*사학과 전임강사

- 1) Cuxham은 1평방 마일이 채 안되는 작은 촌락으로 단일 장원촌락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일 교구를 형성하던 장원이었다. P·D·A·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Cuxham 1240 To 1400*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1
- 2) 1086년에 작성된 Domesday Book은 Cuxham지역의 숲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14세기와 마찬가지로 4개의 밭갈이 쟁기조(plough-team)로 경작할 토지와 11가구의 촌락농가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John Morris, ed., *Domesday Book, 14 Oxfordshire*(Phillimore, Chichester, 1978), 35항 31절.
- 3) P.D.A.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p.5~8.
- 4) reeve는 Cuxham 내의 관습지보유농들이 관리인이 되었을 때 지칭한 명칭이며, bailiff는 Cuxham 내·외의 자유인이 관리인이 되었을 때 지칭한 명칭이었다.

보고하였다. Cuxham장원에 대한 이같은 직접경영은 1358년까지 지속되었으나, 흑사병의 영향으로 장원에 대한 직접경영이 어렵게 되자 1359년부터는 장원 전체를 farmer에게 임대하게 되었다.⁵⁾ 따라서 Cuxham장원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Merton College가 장원을 직접 경영하여 기록을 남긴 1270년대에서 1358년까지 뿐이다.

우리는 그 기록들을 통하여 당시대 농민들의 생활상을 비교적 상세히 알아낼 수가 있다. 이들 기록들은 Merton College 기념관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장원지판문서(Manorial Court Rolls), 장원회계문서, 세금사정서(Tax Assessments), 재산매매증서(Charters), 관습기록문서(Customals) 등이며, 하비(P·D·A·Harvey)에 의하여 1976년에 대 부분 간행되었다.⁶⁾

본고는 하비에 의하여 간행된 기록들을 중심으로 1278년~1358년 사이 Cuxham장원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당시 Cuxham장원의 농민들이던 자유농(free tenant), 관습지보유농(villein), 빈농(cottager)들이 장원 내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또 동일한 제층내에서 개별 농가 사이의 경제력과 영향력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그같은 사회경제적인 차이가 1348~49년의 흑사병 직후 커다란 사회변동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II. 自由農의 地位

1278년~1282년 사이에 작성된 균역대납세(scutage) 기록부에 의하면 Cuxham장원에 거주하는 自由人은 2 개구로, 21에이커(acre)의 토지를

5)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13.

6) P.D.A. Harvey ed., *Manorial Records of Cuxham, Oxfordshire circa 1200-1359*(Oxfordshire Record Society, No.50, 1976).이하 *Manorial Records*로 약하여 표기함.

소유한 Robert Serviens과 4 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한 Robert Grene이다.⁷⁾ 그런데 1279년~1290년 사이에 작성된 재산매매 증서에 따르면 Robert Serviens은 Grene家에 택지(messuage)와 6½ 에이커의 경작지를 양도하고있다.⁸⁾ 이 시기 이후의 문서들에서 Serviens 家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Serviens家는 Grene家에 토지를 양도할 당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Cuxham장원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rene家는 적어도 1290년 이후부터는 Cuxham에서 유일한 자유인 농가로 남게 되었다.

자유농인 Grene家는 다른 부자유 농민들이 부담하는 커다란 의무로부터 대부분 면제되어 있다. 1329년의 장원법정문서에 의하면 Grene家는 영주에 대한 신서(homage)및 충성의 의무 그리고 적은 액수의 지대 부담이 있었을 뿐, 부자유농민들의 의무인 장원재판에의 출두및 복속, 주부역(week-work)및 특별부역(boon-work), 사망세(heriot), 토지보유허가세(entry fine)등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⁹⁾

Grene家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1297~98년의 관습기록문서와 1329년의 장원법정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297~98년에 작성된 관습기록문서에 의하면 Robert Grene은 1 messuage와 3¼ 에이커의 경작지를 자유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3실링(shilling)의 지대를 지불하고 있다. 또 다른 1 messuage와 9에이커의 토지에 대하여는 1 파운드의 후추를 지대로 지불하고 있다.¹⁰⁾ 이같은 내용은 1329년의 장원법정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문서는 John Grene이 2 messuage와 14에이커의 토지를 보유하고 지대로 연 3실링과 1 파운드의 후추를 지불함을 나타내고 있다.¹¹⁾

Grene家의 재산을 <표2-1>과 <표2-2>로 정리한 관습지보유농민들의

7) *Manorial Records*, no.24(MM 5906 mem.1 dorse). MM=Muniments of Merton College, Oxford. mem=membrane.

8) *Manorial Records*, no.17(MM 871)

9) *Ibid.*, no.117(MM 5911)

10) *Ibid.*, no.27(MM 5899)

11) *Ibid.*, no.117(MM 5911)

보유지와 비교해보면 Cuxham장원 내에서 Grene家の 재산은 12에이커의 경작지를 보유한 관습지보유농들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300년에 Robert Grene이 그의 아들 John과 John의 처 Matilda에게 양도한 재산증서에 의하면 Grene家の 재산은 이웃 마을인 Watlington과 Britwell에도 경작지, messuage 그리고 지대수취권의 형태로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Cuxham 외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1290년 경부터 1324년까지 Cuxham 외부에서 구입한 재산은 7개 촌락에 걸치는 20건의 매입을 통하여 24½ 에이커 이상의 토지와 연 20실링의 지대에 이르고 있다.¹³⁾

Grene家が 일반 관습지보유농가의 3배 이상이나 되는 토지를 어떻게 경작했는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는 하나 Cuxham의 기록들을 통하여 일부는 직접 경작을 하고 일부는 소작인들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03년에 나타나는 Grene家 소유의 밭갈이용 황소에 대한 기록과¹⁴⁾ 1299년과 1315년의 Grene家에 딸린 소작인에 대한 기록이¹⁵⁾ 바로 그것들이다. 특히 1299년의 법정문서는 Grene家の 소작인들이 5가구나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소작인 가운데 한 사람이 1304년의 세금사정서에 기록된 John le Black으로 보인다.¹⁶⁾ 이들 소작인에 대한 기록은 1294년과 1331년의 문서에 나타나는 하녀들에 대한 기록¹⁷⁾과 더불어 Grene家の 부와 사회적 지위를 잘 반영하고 있다.

Grene家の 사회경제적 지위는 세금사정서나 그밖의 여러 기록들이 보여주는 경제상황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표 6>으로 정리된 세금사정서는 1295년부터 1327년~28년까지 5차례에 걸친 동산 즉, 조사 당시의 가축, 가구, 따로 드린 방(extra

12) *Ibid.*, no.20(MM 872)

13)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95의 <표 9>참조.

14) *Manorial Records*, no.99(MM 5907 mem.6 dorse)

15) *Ibid.*, no.95(MM 5907 mem.5), no.107(MM 5908 mem.4)

16) *Ibid.*, no.147(MM 5905). <표 6>참조.

17) *Ibid.*, no.89(MM 5907 mem.1), no.121(MM 5909 mem.4)

room), 곡물, 기타 세간 등에 대한 가치의 총합계 현황을 나타낸다. 1327~28년을 제외하면 Grene家가 소유한 동산은 일반 부자유농민들이 소유한 동산에 비하여 약 3 배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1327~28년의 경우는 39실링으로 관습지보유농들의 동산액과 큰 차이가 없으나 그것이 곧 Grene家의 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Grene家가 조사에 앞서 소유 가축이나 곡물을 처분하였거나 또는 뇌물로 세 금액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⁸⁾ 실제로 Grene家가 1327~28년의 전후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부유한 농가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표11>의 가축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조사된 대부분의 경우 거의 Grene家만이 1 마리에 8 데나리우스(denarius)로 평가되는 양들¹⁹⁾을 소유하고 있으며, 1346년에는 40마리, 1355년에는 100마리나 소유하여, 1355년의 경우 양만 하더라도 80실링 이상의 가치가 되었다.

그런데 <표11>을 보면 Grene家의 주요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는 가축의 사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농가는 양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반면에 다수의 장원법정문서는 Grene家의 양떼들이 직영지(demesne)의 곡물을 침해하여 벌금을 물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양떼들이 몇 마리인지는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313년, 1346년, 1355년의 경우 각각 20마리, 40마리, 100마리였다.²⁰⁾

다른 종류의 가축에서도 Grene家는 일반 관습지보유농민들을 능가하고 있다. 그같은 상황은 <표11>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Grene家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수가 일반 관습지보유농들의 그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은 돼지방목세(pannage)의 지불에서도 나타난다. 추수 후 직영지에 방목한 돼지가 관습지보유농민들은 보통 1~2마리인데 비하여 Grene家는 1354년의 경우에는 12마리로 전체 방목 돼지 수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다.²¹⁾

18) 그같은 가능성은 직영지의 실례를 통하여 거의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영지의 예는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p.105~106참조.

19) 양, 소, 말 등의 가축에 대한 가격은 1304년의 동산조사서에 나타난다. 자세한 상황은 <표11> 참조.

20) *Manorial Records*, no.106(MM 5908 mem.3), no.133(MM 5915), no.139(MM 5918)

21) <표12> 돼지방목세 납부 현황 참조.

1348~49년의 흑사병에 의한 대대적인 인구감소는 Grene家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1349년 4월에서 1350년 7월까지 Thomas Grene과 Hugh Grene은 Cuxham장원의 관리인(bailiff)으로 장원경영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장원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²²⁾ 바로 이 기간 중에 Grene家가 관습지보유농인 Waldrugge家와 Waleys家가 보유하던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²³⁾ Grene家는 임대한 이들 토지를 흑사병 이전에 Cuxham장원의 빈농들이던 Henry Gardiner와 Richard Croume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경작케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⁴⁾ 그런데 이 토지는 1358년까지는 Grene家의 수중에 남아있었으나²⁵⁾ 1363년에는 이미 영주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²⁶⁾

흑사병으로 Grene家에 딸린 소작인들도 일부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²⁷⁾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Grene家는 소작인의 확보및 토지경작에서 뿐만 아니라 <표1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가축사육용으로 더욱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慣習地保有農의 地位

1278~82년 사이에 8가구로 기록된 관습지보유농가는²⁸⁾ 1297~98년

22) 1349년 4월 17일부터 6월 23일 사이의 장원회계문서(*Manorial Records*, no.75 MM 5875 mem.1)는 Thomas Grene이 작성하였으며, 1349년 7월 11일부터 1350년 7월 25일까지의 장원회계문서(*Ibid.*, no.76:MM 5877, no.77:MM 5878)는 Hugh Grene이 작성하였다.

23) 언제 Grene 家에 임대되었는가는 나타나지 않으나 1352년 3월의 장원법정문서는 이미 Grene 家에 임대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Ibid.*, no.134(MM 5916)

24) 본문 p.107 참조.

25) *Manrial Records*, no.145(MM 5920 dorse)

26)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136, no.8 참조.

27) 1356년 2월의 장원법정문서에서 부터 Grene 家가 보유하던 2가구의 cottage 가 영주에 귀속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Manorial Records*, no.140(MM 5918 dorse).

28) *Ibid.*, no.24(MM 5906 mem.1 dorse)

사이에 작성된 관습기록문서에 의하면 13가구로 늘어나고 있다.²⁹⁾ 이들은 1290~91년에 3가구³⁰⁾, 1291~92년에 1가구가 형성되었으며³¹⁾, 나머지 1가구는 1292~93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³²⁾ 이들 새로이 생겨난 관습지보유농들의 토지는 직영지 면적이 별로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³³⁾ 1227~43년 사이에 작성된 구역대납세문서 속에 나타나는 8버게트(virgate)의 농민보유지 가운데³⁴⁾, 영주가 매입한 자유인들의 토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관습지보유농가는 13가구로 흑사병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Cuxham문서들 속에 나타나는 관습지보유농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관습지보유농가

연 도	1278~82년 no. 24 (MM5906 mem.1 dorse)	1297~98년 no. 27 (MM 5899)	1304년 no.147 (MM 5905)	1316~17년 no. 149 (PRO E 179/161/8 mem, 11)
보유농가				
Aumoner 家	Gilbert(Gilbert 의 아들)	Gilbert Aumoner	Gilbert Aumoner	—
Beneyt 家	Cecilia (...의 미망인)	Cecilia	—	Alice(Robert reeve의 미망인)
Bovecheriche 家	Eva (William 미망 인)	Richard Bovecheriche	Richard Bovecheriche	—
Brian-Carter	—	Emma(Thomas	Adam Brian	Adam Brian

29) *Ibid*, no.27(MM 5899).

30) Thomas Brian, Robert Waldrugge, Henry Cuxham이다. *Ibid*., no.60(MM 5809)

31) Roger wales이다. *Ibid*, no.61(MM 5810)

32) 1292~93년의 장원회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아마도 거기에 새로운 1인에 대한 토지보유허가세가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추정은 1291~92년에는 관습지보유농민들이 크리스마스 때에 납부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명목의 빵에 대한 현금으로의 대납이 11가구에서 1293~94년에는 13가구로 늘어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bid*, no.61(MM 5810), no.62(MM 5811)

33) 이는 1227년에서 1271년 사이에 작성된 직영지 토지조사서와 1292년 이후에 작성된 직영지의 토지조사서를 비교하여 알 수 있다. *Ibid*., no.23(MM 5906 mem 2 dorse), no.25(MM 5892 mem.1)

34) *Ibid*., no.22(MM 5906 mem.1 dorse)

家		Brian 미망인)		
Est 家	John Est	Richard Est	Richard Est	Richard Est
Hethe-Canon 家	---	Adam Hethe	Adam Hethe	Johanna Hethe
Heycroft 家	Isabelle (Reginald 미망인)	William Heycroft	William Heycroft	William
Hurne -Alynote 家	Gilbert Alynote	Robert Anglo	Robert Hurne	Alina Hurne
Oldman 家	Robert	Robert Oldman	Robert Oldman	Robert Oldman
Waldrugge 家	---	Robert Waldrugge	William Waldrugge	William Waldrugge
Waleys 家	---	Roger Waleys	Roger Waleys	Maria Waleys
Weylond -Mulward 家	---	Henry Weylond	Henry Weylond	---
Wyte-Burdon 家	Richard Wyte	Richard Wyte	Richard Wyte	Sahra Wyte

연 도 보유농가	1329년 no. 117 (MM5911)	1349년 no. 46 (MM 5874 mem.6)	1349년 혹사병 이 후
Aumoner 家	Thomas Aumoner	Emma Aumoner	Robert Magote: 1352년(MM 5916)
Beneyt 家	Alice	Emma(Alice 의 딸)	John Nappere : 1354년(MM 5917 dorse)
Bovecheriche 家	Elia Bovecheriche	Elia Bovecheriche	john le Calwe : 1354(MM 5917 dorse)
Brian-Carter 家	Adam Brian	Hugo Carter	John Lacheford : 1352(MM 5916)
Est 家	Richard Est	Richard Est	Richard Marion : 1354(MM 5917 dorse)

Hethe-Canon 家	Thomas Canon	—	John Alynote : 1353(MM 5916)
Heycroft 家	Cristina Heycroft	Robert Heycroft	William Amy : 1353(MM 5916)
Hurne-Alynote 家	Richard Alynote	Richard Alynote	John Lacheford : 1354(MM5917)
Oldman 家	Robert Oldman	Robert Oldman	John Benet : 1353(MM 5916)
Waldrugge 家	William Waldrugge	William Waldragge	Grene 家
Waleys 家	Maria Waleys	Robert Waleys	Grene 家
Weylond -Muleward 家	Richard Muleward	Richard Muleward	John Dykere : 1353(MM 5917)
Wyte-Burdon 家	Gilbert Burdon	Gilbert Burdon	Walter Burdon : 1354(MM 5917 dorse)

*MM=Muniments of Merton College
mem=membrane

PRO=Public Record Office

관습지보유농들은 집터인 *message*와 1/2 버게트인 12에이커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습지보유농들은 주부역과 특별부역의 의무가 있으며, *Michaelmas, Martinmas, Christmas*³⁵⁾ 세번에 걸쳐서 현금과 현물로 동일한 지대를 지불하고 있다. 다만 1290년대에 생겨난 5가구의 관습지보유농들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cottage* 하나씩을 더 보유하고 있으며, 그 *cottage*에 대한 지대와 특별부역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습지보유농들의 토지보유 현황과 그에 따른 의무는 1297~98년의 관습기록문서와³⁶⁾ 1329년의 장원법정문서에³⁷⁾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2-1>, <표2-2>와 같다.

35) 각각 9월 29일, 11월 11일, 12월 25일이다.

36) *Manorial Records*, no.27(MM 5899).

37) *Ibid.*, no. 117(MM 5911)

〈표2-1〉 관습지보유농들의 토지, 지대및 부역 현황(1297~98년)

관습지보유농	보유지	지대, 부역및 기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hard Est · Robert Wyte · William Heycroft · Richard bovecheriche · Robert Anglo · Cessilia · Gilbert Aumoner · Robert Oldman 	<p>① ½virgate + 1message</p>	<p>1. 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Michaelmas : 씨앗용 1qr. 의 밀 ② Martinmas : 1/2d. (설탕세) 1 Pec. 의 밀 4 bus. 의 Oat 3 마리의 암탉 ③ Christmas : 1마리의 수탉 2마리의 암탉 2d. (선물용 빵값) <p>2. 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¼a. 의 직영지에 대한 밭갈이 및 썰레질 ② 안식일, 축제일을 제외한 연간 격일의 주부역 : 곡물추수, 건조 베기, 짐 나르기 등 ③ 추수시 2인 2일간, 1인 1일간의 특별부역 <p>3.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축및 가금류의 허가 없는 판매 금지 ② 허가 없는 벌목 금지 ③ 1번 주조시 1d. 의 주조세 (toll)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ma · Henry Weylond 	<p>① ½virgate + 1message가 딸린 ½a.</p>	<p>지대, 부역 : Richard Est와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bert Waldrugge 	<p>② 1 message + 1 pla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 3s.의 지대 ② 건조베기 작업 ③ 1인 1일의 건조쌓기 작업 ④ 추수시 1인 3일간의 추수 작업 (자신의 경비로) 추수시 1인 3일간의 추수 작업 (영주의 식사제공으로)
	<p>① ½virgate</p>	<p>지대, 부역 : Richard Est와 동일</p>

· Roger Waleys	+ 1 message 가 달린 ½ a.	
	② 1 cottage	① 연 2s.의 지대 ② 1인 1일의 건조베기 작업 ③ 1인 1일의 건조쌓기 작업 ④ 추수시 1인 2일간의 추수작업 (자신의 경비로) 추수시 1인 2일간의 추수작업 (영주의 식사제공으로)
· Ada Brian	① ½ virgate	지대, 부역 : Richard Est와 동일
	② 1 message + 1 place	① 연 2s. 지대 ② 건조 베기 작업 ③ 1인 1일의 건조쌓기 작업 ④ 추수시 1인 3일간의 추수작업 (자신의 경비로) 추수시 1인 3일간의 추수작업 (영주의 식사제공으로)
	③ 1 place	지대 : 연 6d.
* 모든 관습지 보 유인의 혜택		건초작업 후 3bus.의 밀로 만든 빵 가운데 1덩이(6d. 가치)와 자신의 건조를 만들 수 있는 목초지를 할당 받음

- * qr. = quarter
- pec. = Peck
- bus. = bushel
- s. = shilling
- d. = denarius
- a. = acre
- 1 qr. = 8 bus.
- 1 bus. = 4 Peck
- 1 Peck = 약 9 liter

Aumoner · Richard Alynote · Alice	+1 message	② 예외 : Christmas 때 물세 1d.가 더 있음. message에 대한 지대없음
· Elia Bovecheriche · Richard Est · Gilbert Burdon · Cristina Heycroft	$\frac{1}{2}$ virgate +1 message	① 보유지에 대한 지대및 부역 동일 (William Waldrugge와) ② 예외:message에 대한 지대 없음
· Maria Waleys	① $\frac{1}{2}$ virgate +1 message	Elia Bovecheriche와 동일
	② message	① 지대 : 연 3S. ② 1인 1일의 건조작업 * 건조작업후 빵 1명이 받음 ③ 1인 1일의 건조쌓기 * 건조쌓기 후 $\frac{1}{2}$ d. 받음 ④ 추수시 2인 2일의 작업(첫날 : 영주의 식사제공, 둘째날 : 자신의 비용)
· Robert Oldman	① $\frac{1}{2}$ virgate + $\frac{1}{4}$ virgate +1 message	Thomas Aumoner와 동일 예외 : 물세 $\frac{1}{2}$ d.가 더 있음($\frac{1}{4}$ virgate에 대한 것)

관습지보유농들이 연간 납부하는 지대와 부역을 화폐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1296~97년부터 1347~48년까지 대체적인 곡물가격은 밀이 1쿼터(quarter)에 6실링 $1\frac{1}{2}$ 데나리우스이며, Oat가 1부셀(bushel)에 $3\frac{1}{2}$ 데나리우스이다. 닭은 암탉이나 수탉 다같이 1마리에 1 데나리우스이다.³⁸⁾ 이 가격을 Michaelmas, Martinmas, Christmas 때 지불한 현금및 현물지대에 적용하면 전체 지대는 <표 3>처럼 8실링 $2\frac{1}{2}$ 데나리우스가 된다.

38) 각 종의 가축에 대한 가격은 1304년 세금사정서에 나타나 있다. *Ibid.*, no. 147(MM 5905). <표11>참조.

〈표 3〉 곡가 및 지대의 화폐환산액

연 도	밀(qr. 당)	Oat(bus. 당)
1296~97(no.64 : MM 5813)	5S.6d	3 d.
1297~98(no.65 : MM 5814)	5S.9d	4 d.
1298~99(no.66 : MM 5815)	5S.8d	4 d.
1328~29(no.70 : MM 5851)	6S.2 $\frac{1}{2}$ d.	2 $\frac{1}{2}$ d.
1329~30(no.71 : MM 5852)	6S.8d.	4d
1346~47(no.72 : MM 5872)	6S.2d.	—
1347~48(no.73 : MM 5876)	7S.	4d.
평 균	6s.1 $\frac{1}{2}$ d.	3 $\frac{1}{2}$ d.
지 대	화폐환산액	
① Michaelmas · 밀 1 qr	6s.1 $\frac{1}{2}$ d.	
② Martimmas · $\frac{1}{2}$ d. · 밀 1 Peck · Oat 4 bus · 암탉 3마리	$\frac{1}{2}$ d. 2 $\frac{1}{2}$ d. 14d. 3d.	
③ Christmas · 수탉 1마리 · 암탉 2마리 · 2d.	1d. 2d. 2d.	
총 액	8s. 2 $\frac{1}{2}$ d.	

부자유농민들이 연간 제공하는 각종의 부역에 대한 가치는 1329년의 기록에 의하면³⁹⁾ 〈표 4〉와 같다.

39) *Ibid.*, no.117(MM 5911).

〈표 4〉 각종 부역에 대한 가치

보유인	부역의 종류	1일 노동의 가치
관습지 보유농	1. 일상노동 : 땅파기, 거름 흘뿌리기, 곡식 타작	1d.
	2. 추수시기의 곡식타작	1½d.
	3. 수레를 가지고 거름나르기	1½d.
	4. 추수시 수레로 곡물 나르기	3d.
	5. 말 1마리로 곡물 나르기	1½d.
	6. 밭갈이 작업(쟁기질)	1½d.
	7. 건조용 목초 베기 작업	2d.
	8. 곡물베기 작업(1일 ½에이커)	
	① 밀 베기 작업	3d.
	② 그 외의 곡물 베기 작업	2d.
빈 농	1. 추수시 곡물베기 작업	1½d.
	2. 건조용 목초베기 작업	1d.
	3. 건조 쌓기 작업	½d.
	4. 양사(fold)이전 작업	1d.

그런데 1330~31년과 1332~33년의 부역보고서에 의하면⁴⁰⁾ 관습지보유농들이 1년 동안 제공하는, 〈표 4〉의 가치를 갖는 부역의 총 일수는 1인당 평균 100여일 정도이며 그 가치는 11실링 이상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표 5〉와 같이 정리된다.

〈표 5〉 관습지보유농의 부역과 그 가치

부역	연도	1330~31년		1332~33년	
		총 부역일	가치(s.d.)	총 부역일	가치(s.d.)
밀베기 작업		51	12.9	51	12.9

40) *Ibid.*, no.42(MM 5853), no.43(MM 5857).

· 봄곡물 베기 작업	78	13.0	63	10.6
· 밀 타작	242	20.2	324	27.0
· 봄 곡물 타작	150	12.6	127	10.7
· 건조용 목초베기 작업	33	5.6	33	5.6
· 거름 흘뿌리기	12	1.0	—	—
· 밭갈이 때 가축 길잡이 하기	21	1.9	3	0.3
· 도랑치기	110	9.2	100	8.4
· 흙고르기(파종위한)	44	3.8	50	4.2
· 거름 내리기	192	24.0	80	10.0
· 운반 작업	—	—	30	3.9
· 곡물 그루터기 자르기	—	—	200	16.8
· 기타	$88\frac{1}{4}$	$7.4\frac{1}{4}$	$30\frac{1}{2}$	$2.6\frac{1}{2}$
· 추수시 특별부역 (밀베기 작업)	55(11가구)	13.9	60(12가구)	15.0
* 추수시 특별부역(cottage 보유분의 밀베기 작업)	14		14	
* 밭갈이 작업($\frac{1}{4}$ 에이커)	11가구의 밭갈이		12가구의 밭갈이	
* 부역 판매	100		$146\frac{1}{2}$	
합 계	$1076\frac{1}{4}$	$£6.4S.7\frac{1}{4}d$	$1151\frac{1}{2}$	$£6.7S.0\frac{1}{2}d.$
계산된 관습지 보유농의 수	$10\frac{1}{2}$ 명		11명	
관습지 보유농 1인의 평균 부역일 및 그 가치	$102\frac{1}{2}$ 일	$11S.9\frac{2}{3}d.$	105일	$11S.5\frac{1}{4}d.$

* 관습부역 가운데 $\frac{1}{4}$ 에이커의 밭갈이와 판매된 부역은 계산에서 제외함.

* cottage 하나씩 더 보유한 5가구의 cottage에 대한 특별부역은 계산에서 제외함.

이상에서와 같이 1/2버게트의 관습보유지에 대하여 1년 동안 1인의 농민이 제공하는 지대와 부역은 모두 합하여 약 20실링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관습지보유농들의 부담은 자유인·Grene家の 연 3실링의 지대에 비하면 훨씬 큰 것이다. 특히 관습지보유농들만이 직영지에 대한

주부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고 있다. 관습지보유농민들은 그들만이 주부역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빈농들에 비하면 훨씬 부유한 계층이었다. 관습지보유농민들과 빈농층 사이의 부의 차이는 동산에 대한 조사인 <표 6>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장원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장원관리인(reeve)직은 관습지보유농민들 가운데서만 임명되었으므로⁴¹⁾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원 내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관습지보유농들의 지위는 빈농들보다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관습지보유농민들 가운데에서 1/2버게트 이외에 cottage를 하나씩 더 보유한 농가는 5가구로, 1290년대에 빈농에서 관습지보유농으로 계층이 상승된 이후에도 빈농 때에 보유하던 cottage도 계속 보유하게 된 때문이었다. 이들은 비록 cottage를 하나씩 더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다음에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보유농들보다 더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다.⁴²⁾

그러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똑같은 지대와 부역을 부담하던 관습지보유농민들 사이의 지위는 어떠하였는가?

먼저 관습지보유농민들이 보유한 동산에 대한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동산에 대한 보유 현황은 1295년, 1304년, 1305~06년, 1317~18년, 1327~28년에 조사된 세금사정서에 나타나며⁴³⁾,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41) Cuxham의 장원문서들은 맨처음에 작성 일자와 장원관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reeve(prepositus)로 표기된 장원관리인들은 모두 관습지보유농 출신들이며, 빈농출신들은 한명도 없다. 본문 p. 87~88 참조.

42) 본문 p. 88 참조.

43) *Manorial Records*, no.146(MM 2852), no.147(MM 5905), no.148(PRO E 179/161/10 mem, 28), no.149(PRO E 179/161/8 mem.1), no.150(PRO E 179/161/9 mem. 13)에 각각 수록됨. PRO=Public Record Office.

<표 6> Cuxham 농민들의 동산소유현황

연 도		1295, 1월 (no. 146)	1304, 3월 (no. 147)	1305~06년 (no. 148)	1316~17년 (no. 149)	1327~28년 (no. 150)
자유인	Grene 家	93S.4d.	—	87S.9d.	64S.0d.	39S.0d.
관습지 보유농	Aumoner 家	40S.0d.	16S.2d.	252, 0d.	—	24S. 0d.
	Beneyt 家	43S.5d.	—	55S. 0d.	40S. 0d.	24S.0d.
	Bovecheriche 家	60S.0d.	17S.11d.	12S.6d.	—	30S.0d.
	* Brian-Carter 家	13S.4d.	19S.7d.	25S.0d.	16S.0d.	15S.0d.
	Est 家	37S.1d.	34S.0d.	62S.6d.	16S.0d.	—
	* Hethe-Cano-n 家	36S.3d.	26S.2d.	22S.6d.	24S.0d.	12S.0d.
	Heycroft 家	—	31S.2d.	30S.0d.	40S.0d.	30S.0d.
	Hurne-Alynote 家	—	17S.8d.	22S.6d.	24S.0d.	—
	Oldman 家	40S.0d.	26S.2d.	32S.6d.	32S.0d.	20S.0d.
	* Waldrugge 家	42S.6d.	15S.3d.	10S.0d.	44S.0d.	36S.0d.
	* Waleys 家	38S.4d.	8S.10d.	15S.0d.	16S.0d.	—
	* Weylond - Muleward 家	36S.8d.	13S.6d.	—	—	12S.0d.
	White - Burdon 家	—	16S.8d.	20S.0d.	10S.8d.	30S.0d.
빈 농			Simon Gardiner : 2S.8d. ** John Blak : 4S. 6d.		Robert Deyere : 16S.0d.	William Maucorneys : 8S.0d.

* 표 농가는 1290~93년 사이에 형성된 농가로 다른 관습지 보유농에 비하여 cottage를 하나씩 더 보유하고 있음.

** Grene 家の 소작인

관습지보유농들이 보유한 동산을 어느 한 해만 살펴보면 보유 액수의 차이가 뚜렷하여 그들 사이에 커다란 빈부의 차이가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5 번에 걸쳐 조사된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시

기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ovecheriche家は 1295년에는 제일 부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1304년과 1305~06년에는 거의 제일 가난한 농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사된 동산액은 조사 당시의 상태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304년의 조사는 조사한 품목과 그 각각의 품목에 대한 가치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당시 작성된 문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은 가축 이외에도 가구및 세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곡물, 저장된 돼지고기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1년 중에도 조사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⁴⁴⁾

그렇기에는 하나 Beneyt家, Heycroft家, Oldman家가 조사된 시기에 따라 큰 변동이 없이 많은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로, 다른 농가에 비하여 부유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315년의 장원법정문서는 이들 세 농가가 번성하는 부유한 농가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문서는 Cuxham장원의 기록으로는 유일하게 이들 세 농가가 장원의부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⁴⁵⁾ 당시 세 농가가 구입한 토지는 자유지로서 Robert Oldman이 3에이커, Robert Beneyt의 미망인 Alice가 2에이커 그리고 William Heycroft가 1에이커였다. 이 면적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관습지가 12에이커인 점을 생각해 보면 매우 넓은 것으로, 3농가의 부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3농가의 토지 구입은 영주의 허가없이 이루어졌고, 그런 후에도 어떠한 벌금도 물지않고 있다. 그같은 사실은 흑사병 이전에도 농민들 사이에 사적인 토지매매가 가능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동시에 토지매매를 통한 부유농민의 형성이 가능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⁴⁶⁾ 즉 영주의 허가없이 이루어진 토지매입, 그런 후에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Oldman家, Beneyt家, Heycroft家の 토지매입은 동일한 보유지와

44) *Ibid.*, no.147:Detailed Assessment(MM 5905).

45) *Ibid.*, no.107(MM 5908 mem.4).

46) 흑사병 이전의 시기부터 농민들 사이에 사적인 토지매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Peterborough수도원령에서 작성된 농민들 사이의 토지거래문서가 발견된 이후부터 밝혀지고 있다. 당시 작성됐던 농민들의 토지거래 문서는

동일한 지대 및 부역의 납부에서 추정되는 관습지보유농들 사이의 동질성이 실제로는 외견상의 것임을 명백히 나타낸다. 그것은 영주에 의한 직영지의 직접경영(demesne farming)으로⁴⁷⁾ 고전장원(Classical manor)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Cuxham장원의 농민들에게도⁴⁸⁾ 개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부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3 농가 가운데에서도 Robert Oldman이 가장 부유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Robert Oldman은 1311년 1월부터 1349년 3월 그가 사망할 때까지 Cuxham장원의 장원관리인직에 종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Oldman가가 Cuxham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있는 농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1315년의 자유지 3에이커의 구입 이외에도 Robert Oldman은 1323년에는 Cuxham내의 관습지 1/4버케트(6에이커)를 더 보유하기 시작하여⁴⁹⁾ 다른 관습지보유농민들보다 2 배 가까이 나 되는 많은 토지를 보유한 부농으로 성장하고 있다. Oldman가가 가장 부유하였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나타난다. Cuxham에서 수레를 끄는 말(carthorse)을 보유한 농가는 오직 Oldman가 뿐이었으며⁵⁰⁾,

1960년에 간행되었다. C.N.L. Brooke and M.M. Postan, eds., *Carte Nativorum: A Peterborough Abbey Cartulary of the Fourteenth Century*(Northamptonshire Record Society, xx, Oxford, 1960). 본 문서를 통한 농민들 사이의 토지거래에 대한 고찰은 필자의 줄고 "13~14세기 英國農民의 土地去來 -Peterborough 修道院領을 中心으로-", 「西洋史研究」, 7, 1985. 참조.

- 47) 중세시대 영국은 13세기가 전형적으로 영주에 의한 직영시대, 영주계층은 자신들의 영지를 기업적으로 경영하였다. E. Miller and J.Hatcher, *Medieval England: Rural society and Economic Change 1086~1348*(London, 1978), pp.204~213. 중세 영국의 영지경영체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줄고 "영국 중세 영지 경영체제의 연구와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고찰" 「蔚山史學」, 1, 1987. 참조.
- 48) Cuxham장원은 경작지가 영주직영지와 농민보유지로 나뉘어져 직영지가 농민들의 부역에 의하여 경작되는 고전장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장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들을 참조할 것. B.H. Slicher van Bath, *The Agrarian History of Western Europe A.D. 500~1850*(London, 1963), pp.40~9. George Duby, *Rural Economy and Country Life in the Medieval West*, trans. C. Postan(Edward Arnold, 1968), pp.34~5.
- 49) *Manorial Records*, no.112(MM 5908 mem.9)
- 50) Oldman 가가 보유한 2마리의 carthorse는 1349년 Robert Oldman과 그의 처 Agnes의 사망세로 납부되고 있다. *Ibid.*, no.47(MM 5875 mem.2).

Robert Oldman은 자신의 머슴(famulus)도 거느리고 있었다.⁵¹⁾ 또 그 기간 동안 Oldman家は 가장 빈번한 판매용 ale주 주조자로서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촌락 전체 주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ale주 주조세(toll) 지불 현황

연 도	1323 (no. 112)	1328 (no. 115, 116)	1333 (no. 123, 124)	1335 (no. 126)	1336 (no. 127, 128)	1338 (no. 129)	1341 (no. 130)	1343 (no. 131)	1346 (no. 133)	1356 (no. 140 ~142)
Aumoner 家	1	1	1			1	2	1		Robert Magote : 1
Beneyt 家				1						
Bovecheriche 家		1								
Brian-Carter 家	1		1						1	
Est 家		1	1		1	1	1	2	1	
Hethe-Canon 家	1	1	1	1	1		1	2		
Heycroft 家		1		1			1	2	2	
Hurne-Alynote 家			1	1					1	John La- cheford : 3
Oldman 家	8			5	6	4	10	13	7	Tomas Mar- shale : 3
Waldrugge 家		2							2	
Waleys 家	1	1					1	1	1	
Wyte -Burdon 家				1						
Bovetoun -Messor 家						1	2	1	1	
Aumoner -Toterre 家		3	4	3	4	1	1	1		
Stoylepe -Maucorney 家	1			1		1	3			

51) *Ibid.*, no.72(MM 5872)

Sawyer -Croume 家				1	2	1	1		1	
합 계	13	11	9	15	14	10	23	23	17	7

* 각각의 숫자는 주조 회수를 나타냄.

* 매 1 회의 주조세는 1 데나리우스 임.

Oldman家の 부를 나타내 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흑사병으로 Oldman家の 가족들이 모두 사망한 후에 조사한 재산조사목록이다.⁵²⁾ 이에 따르면 사망세로 2 마리의 수레를 끄는 말을 납부한⁵³⁾후 Oldman 家の 동산은 양 72마리, 소 5 마리 등 모두 120실링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관습지보유농 1 가구에 보통 1 마리씩 보유하고 있는 발갈 이용 말(affer) 60마리나 또는 젖을 짜는 암소 30마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Oldman家가 대단히 부유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Oldman家の 유산은 <표 8>처럼 정리된다.

<표 8> Oldman 家の 유산

품 목	가 치	품 목	가 치
· 양 72 마리(새끼 11)	22 S. 4 d.	· 가축의 굶은 기름	2 S. 6 d.
· 돼지 3 마리(숫돼지 1)	4 S.	· 천(대마, 아마)	9 d.
· 어린 황소 1 마리	4 S.	· 면 수건	3 d.
· 송아지 딸린 암소 1 마리	4 S.	· 옷감 천(겉옷감)	13 S. 4 d.
· 새끼뺨 암소 1 마리	4 S.	· 수건 용 천	1 S. 6 d.
· 어린 소 1 마리	3 S. 4 d.	· 예배용 천	6 d.
· 송아지 1 마리	1 S. 8 d.	· 1 qr. 의 혼합곡식	8 d.
· 향아리 1 개	2 S.	· 35 파운드 의 양털	(11 S. 8 d.)
· 주전자 1 개	6 d.	· 4 qr. 6 bus. 의 옛기름	(19 S.)
· 삼발이 달린 바케스 2 개	1 S.	· 6 그 루 의 butcher's broom 나무	9 S.
· 물단지 1 개	8 d.	· 여러마리 새끼가 딸린 겨위 1 마리	(3 d.)

52) *Ibid.*, no.49(MM 5874 mem.4).

53) 주 50) 참조.

· 바퀴 달린 수레 1 대	4 S.	합 계	$89 S. 3 \frac{1}{2} d.$ $+ (30 S. 11 d.)$ $= (120 S. 2 \frac{1}{2} d.)$
· 마로 만든 가리개 천	3 S. 4 d.		
· 1마리분의 돼지고기 햄	5 S. 4 d.		
· 치즈 10 덩이	$7 \frac{1}{2} d.$		

- * 양털 1 파운드 : 4 d. (no. 70 : 1328~29)
- * 거위 1 마리 : 3 d. (no. 147 : 1304)
- * 옛 기름 1 쿼터 : 4 S. (no. 70 : 1328~29)
- * ()안의 금액은 위의 기준에 의거 필자가 계산함.

당시에 장원관리인직을 가질 수 있던 자격은 장원에서 부유한 계층에 한정되었고 또 장원관리인은 장원의 농민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다.⁵⁴⁾ 이점을 생각하면 38년 동안이나 Robert Oldman이 장원관리인이었다는 사실로도 Oldman家の 부와 지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Robert Oldman이 장원관리인이 된 후 Oldman家は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더욱 부유해졌음이 틀림없다. 장원관리인으로 봉사하는 대신 Robert Oldman은 지대와 부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장원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추구가 가능했던 점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원법정문서에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Robert Oldman은 직영지의 밭갈이 머슴을 자신의 밭갈이 작업에 사용하고,⁵⁵⁾ 영주의 허가없이 자신의 가축들을 직영지의 목장에서 기르게 하고⁵⁶⁾, 직영지의 수레와 쟁기를 고칠 목재로 자신의 수레와 쟁기를 고치고 있다.⁵⁷⁾ 장원관리인으로서 Robert Oldman이 항상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것은 아

54) reeve, hayward, ploughman 등 장원의 관리에 피선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것. G.C. Homans, "The Rural Sociology of Medieval England", *Past and Present*, iv(1953), pp.38~9; Janet Williamson, "Norfolk Thirteenth Century", in P.D.A. Harvey ed., *The Peasant Land Market in Medieval England*(Oxford, 1984), p.52;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Past and Present*, no.93(1981), pp.14~15.

55) *Manorial Records*, no.112(MM 5908 mem.9).
 56) *Ibid.*, no.107(MM 5908 mem.4), no.123(MM 5912)
 57) *Ibid.*, no.107(MM 5908 mem.4).

나⁵⁸⁾ Robert는 자신의 지위와 직책을 이용하여 직영지의 관리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추구와 재산증식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15년 Robert Oldman과 함께 2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한 Alice도 그녀의 남편이 1288년부터 1311년까지 Cuxham장원의 장원관리인이었다.⁵⁹⁾ 또 1에이커를 구입한 Heycroft 역시 1318~19년부터 1328~29년까지 이웃 Holywell마을의 장원관리인으로 일하였다.⁶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현직의 Cuxham 장원관리인과 이웃 마을의 장원관리인으로 발탁된 Heycroft가가 Cuxham장원에서 가장 부유하였고 가장 번성하였으며 지위가 높았던 것은 장원관리인으로 임명되는 농가의 경제적 위치와 더불어 장원관리직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세금사정서에 나타나는 동산의 소유현황은 1290년대에 형성된 관습지보유농들이 대체로 다른 농가에 비하여 더 빈곤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Waleys家の 동산액은 1295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316~17년의 동산액은 빈농인 Robert Tintor의 16 s. 과 같은 액수였으며⁶¹⁾, 1315~16년에는 사망세로 지불할 가축이 없었던 듯 1실링의 현금으로 사망세를 지불하고 있다.⁶²⁾ Waleys家 이외에도 Brian-Carter家, Weylond-Muleward家도 다른 농가에 비하여 가난하여 Cuxham장원의 관습지보유농민들 가운데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고 있다.

1348~49년의 흑사병은 Cuxham의 관습지보유농민들에게 즉각적이며

58) Robert Oldman은 자신의 가축으로 직영지의 발갈이 가축조 일부를 구성하거나 수레나 말로써 운송작업을 돕기도 하였다.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70

59) *Ibid.*, p.64의 <표 5> 참조.

60) 장원회계문서에 Holywell의 reeve로서 William Heycroft의 지대 면적은 1318~19년 (*Manorial Records*, no.68: MM 5842)부터 1328~29년 (*Ibid.*, no 5851)까지 기록되어 있다.

61) *Ibid.*, no.149(PRO E 179/161/8 mem. 11)

62) 사망세는 사망한 보유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훌륭한 가축(meliorem bestiam)'으로 규정하고 '오직 1마리의 가축 뿐이라도 그것을 징수한다'는 기록 (*Ibid.*, no 86:MM 5906 mem.1)으로 보아 Waleys家の 경우 당시에 값어치 있는 가축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흑사병이 Cuxham을 휩쓰는 동안 주민들의 많은 수가 희생되었는데, 1349년 2월 장원회계문서에 나타나는 12인의 관습지보유농민들도⁶³⁾ 그해에 대부분 사망하였다. 1348년 7월 25일부터 1349년 4월 18일까지를 기록한 장원회계문서는 5인의 관습지보유농민에 대한 사망세를 기록하고 있으며,⁶⁴⁾ 1349년 4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를 기록한 문서는 5인의 관습지보유농민에 대한 사망세를 더 기록하고 있다.⁶⁵⁾ 흑사병 직후에 작성된 장원법정문서는 남아있지 않으나, 흑사병 이후 최초의 것으로 남아있는 1352년 3월에 개정된 장원법정문서로도 흑사병의 타격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문서는 13개의 관습보유지 가운데 9개의 보유지가 영주에 귀속되어 있음을 나타낸다.⁶⁶⁾ 그 후 1353년 1월의 법정문서는 이들 영주에게 귀속된 보유지 가운데 3개의 보유지에 새로운 보유인이 들어와⁶⁷⁾ 영주에 귀속된 공한지가 6개로 줄었음을 보이고 있다. 이후로 1353년 5월의 법정문서에 1보유지⁶⁸⁾, 1354년 4월의 문서에 1보유지⁶⁹⁾, 1354년 12월에 3보유지에 보유인이 들어왔으며⁷⁰⁾, 1355년에는 1/4버게트에 John Stouhard가 들어옴으로써⁷¹⁾ 대부분의 관습보유지는 일단 새로운 보유인을 갖게 되었다.

1348~49년의 흑사병은 Cuxham촌락에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다수 희생시켜 토지경작자의 절대부족 현상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보유인들은 대부분 장원 외부인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었다. 그같은 상황 속에서 혈연에 의한 보유지 상속이라는 오랜 상속관습은 일시에 무너져버리게 되었으며, 일단 정착했던 보유인들도 때때로

63) *Ibid.*, no.46(MM 5874 mem.6)

64) *Ibid.*, no.74(MM 5875 mem.2)

65) *Ibid.*, no.75(MM 5875 mem.1)

66) *Ibid.*, no.134(MM 5916)

67) *Ibid.*, no.135(MM 5916)

68) *Ibid.*, no.136(MM 5917)

69) *Ibid.*, no.137(MM 5917)

70) *Ibid.*, no.138(MM 5917 dorset).

71) *Ibid.*, no.139(MM 5918)

토지보유 조건이 더 유리한 곳으로 떠나버렸다.⁷²⁾ 이렇게 되자 관습지 보유농민들의 부역에 의한 직영지 경작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흑사병 이전에 관습지보유농민들의 큰 부담이던 주부역이 전면 금납화(commutation)되어 연 9 실링~10실링 정도의 지대로 대체되고 연 4일 정도의 특별부역만 남게되었다.⁷³⁾ 이에 따라 흑사병 이전에 연 20 실링 정도의 지대와 부역을 납부하던 관습지보유농민들은 이제는 그 부담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 흑사병 이전에 대체로 20실링~30실링씩을 납부하던 토지보유허가세도 대부분 면제되어 흑사병 이후 Cuxham의 관습지보유농들은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부역의 전면 금납화는 농민들이 그들의 모든 노동력을 자신들의 토지와 가축 사육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개인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농업경영에 의하여 농민들 사이에 계층이 분화될 수 있는 원천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흑사병 이후 관습지보유농들이 부담하게 된 지대와 부역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흑사병 후(1353~1358년) 관습지 보유농민들의 지대와 부역

연 도	새 보유자	보유지(전 보유자)	연지대	연 부 역	토지보유 허가세
1353년 1월 (no.135)	John Benet	1 messuage + $\frac{1}{2}$ virgate (Oldman)	13S.4d.	1인 2일의 제초작업 1인 2일의 건조작업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William Amy	1messuage + $\frac{1}{2}$ virgate (Robert Heycroft)	10S.	1인 1일의 제초작업 1인 1일의 건조작업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72) 흑사병 이후 Cuxham장원의 상속관습의 변화와 토지보유인들의 유동성에 관해서는 필자의 줄고 “13~14세기 英國農民의 相續慣習 —Cuxham莊園村落을 중심으로—”, 『蔚山史學』, 2, 1988을 참조. 흑사병 이후 농민들은 대다수가 영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장원을 떠날 수 있게 되어 실제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J.A.Raftis의 다음 글을 참조할 것. *Tenure and Mobility: Studies in the Social History of the Medieval English Village*(Toronto, 1964), pt.III.

73) <표 9>참조.

	John Alynote	1messuage + $\frac{1}{2}$ virgate (Thomas Canon)	10S.	1인 1일의 제조작업 1인 1일의 건조작업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1353년 5월 (no.136)	John Dykere	1messuage + $\frac{1}{2}$ virgatc (Richard Mulleward)	10S.	1인 1일의 제조작업 1인 1일의 건조작업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1354년 4월 (no. 137)	John Lacheford	1messuage + $\frac{1}{2}$ Virgate (Richard Alynote)	9S.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John Calwe	1messuage + $\frac{1}{2}$ virgate (Robert Heycroft)	10S.	1인 1일의 제조작업 1인 1일의 건조작업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1354년 12월 (no.138)	Walter Burdon	1messuage + $\frac{1}{2}$ virgate (Gilbert Burdon)	9S.	1인 1일의 제조작업 1인 1일의 건조작업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John Nappere	1messuage + $\frac{1}{2}$ virgate (Emma Revlove)	9S.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Thomas Marshall	1messuage + $\frac{1}{2}$ virgate (Oldman)	13S.4d.	1인 2일의 제조작업 1인 2일의 건조작업 1인 2일의 추수작업	10S.
	Richard Marion	1messuage + $\frac{1}{2}$ virgate (Richard Est)	9S.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1355년 5월 (no.139)	John Stouhard	1cottage + $\frac{1}{4}$ virgate + 1rood. (Matilda Bovecheriche)	5S.	1인 1일의 추수작업	식용수탉 2 마리
1358년 4월 (no.145)	John Wadekyn	1messuage + $\frac{1}{2}$ virgate (Richard Mulleward)	9S.	1인 1일의 제조작업 1인 1일의 건조작업 1인 2일의 추수작업	면제

* 1357년 12월 (no.144)	Alice Gibbes	1cottage	2S.		
----------------------------	--------------	----------	-----	--	--

Cuxham장원의 기록들은 흑사병 직후의 대변혁기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민감히 적응한 몇몇 관습지보유농들이 새로운 부농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Tomas Marshall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Thomas Marshall은 <표 9>로도 알 수 있듯이 1354년 12월의 장원법정문서에 Oldman家の 보유지에 들어왔다가 2년도 안되어 떠나버린 John Benet⁷⁴⁾을 이어 새로운 보유인이 된 것으로 처음 나타난다.⁷⁵⁾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존재하는 적은 기록으로도 Thomas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잘 알 수가 있다. 특히 Thomas의 경제활동과 부는 흑사병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직영지의 임대 기록과 가축의 소유현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농민들에 대한 Cuxham장원 직영지임대는 1353~54년의 장원회계문서에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⁷⁶⁾ <표10>으로 정리된것과 같이 대체로 1년 단위의 기간과 5에이커 이하의 면적이었다. <표10>으로 정리된 것을 보면 임차인이 알려진 경우 Thomas Marshall은 1357~58년에 1/2에이커의 경작지를 단기간 임대 하였으며⁷⁷⁾, 1358~59년에는 1년간 5에이커와 3루드(rood)의 넓은 경작지를 임대하여⁷⁸⁾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 임차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보유지 1/2버게트는 영주의 허가도 없이 그의父 John Marshall에게 7년간 재임대하여 장원의 법정문서에 나타나고 있다.⁷⁹⁾

74) *Manorial Records*, no.135(MM 5916)

75) *Ibid.*, no.138(MM 5917 dorset)

76) *Ibid.*, no.81(MM 5882)

77) *Ibid.*, no.83(MM 5885)

78) *Ibid.*, no.85(MM 5887)

79) *Ibid.*, no.140(MM 5918 dorset)

<표 10> 직영지 임대현황

연 도	임 차 인	임대면적(전 보유인)	임대가격	임대기간
1353~54년 (no. 81)		· 2 a 토지 · 1 croft(Richard Est)	12 d. 6 d.	1년 1년
1354~55년 (no. 82)		· 2 $\frac{1}{2}$ a. 1 rood 토지 · 면적미상 목초지 (meadow)	22 d. 3 S. 4 d.	1년 1년
1355년 (no.139)	John Calwe	· 면적미상 방목지(pasture) · 면적미상 토지(Dykere) · 1croft와 curtillage(Dykere)	2S. 10d. 6d.	8월까지
	Richard Marion	· $\frac{1}{2}$ a. 토지(Dykere)	4d.	1년
	Robert Magote	· $\frac{1}{2}$ a. 토지(Matilda Bovecheriche)	4d.	1년
	John Alynote	· 1a. 토지(Matilda Bovecheriche)	8d.	1년
	John Alynote	· $\frac{1}{2}$ a. 토지(Matilda Bovecheriche)	4d.	1년
1356년 (no. 140)	Thomas Persones	· 1a. 토지	8d.	1년
1356~57년 (no.83)	Robert Magote	· 1 rood 토지	3d.	1년
	Henry Wattes	· 면적미상 방목지	2S.6d.	
	John Lacheford	· 3a. 방목지	8d.	
	John Lacheford	· 면적미상 방목지 · 3a. 방목지	8d. 12d.	
1357~58년 (no.84)	Thomas Marshall	· $\frac{1}{2}$ a. 토지	5d.	Michaelmas까지 평생 평생
	Robert Magote	3rood 토지	8d.	
	John Calwe	· 1a. 토지	10d.	
	Richard Croume	· 1a. 토지	10d.	
	John Lacheford	· $\frac{1}{2}$ a. 토지	4d.	
	John Wadkyn	· 3a. 토지	2S.	
		· 12a. 방목지	3S.	1년

1358~59 년 (no. 85)		· 4 $\frac{1}{2}$ a. 방목지	16 d.	1 년
		· 3 $\frac{1}{2}$ a. 방목지	12 d.	1 년
		· 면적미상 방목지	2S, 6 d.	1 년
		· 1 a. 방목지	10 d.	1 년
		· 면적미상 방목지	5S, 6 d.	1 년
	Robert Magote	· 1a. 토지	5d.(반년분)	1 년
	John Lacheford	· 1a. 토지	5d.(반년분)	1 년
	Thomas Marshall	· 5a. 3rood 토지	· 2S, 4 $\frac{1}{2}$ d.(반년분)	1 년
	Picardo Priour	· 1rood 토지	1 $\frac{1}{2}$ d.(반년분)	1 년
	John Calwe	· $\frac{1}{2}$ a. 토지	2 $\frac{1}{2}$ d.(반년분)	1 년
John Calwe	· 3 buttes 토지	4 d. (반년분)	1 년	
Henry Gardiner	· 1 rood 토지	1 $\frac{1}{2}$. (반년분)	1 년	

그런데 <표11>로 정리된 직영지 침입의 가축현황을 살펴보면 Thomas Marshall은 적어도 양 80마리와 말 2마리의 사육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⁸⁰⁾, Thomas가 토지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가축 사육자로서도 크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Cuxham의 기록은 Thomas Marshall 이외에도 Robert Magote, John Calwe, John Lacheford가 새로운 부농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10>과 <표11> 그리고 <표12>의 돼지방목세 기록을 통하여 가축사육과 토지경작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 *Ibid.*, no.139(MM 5918)

〈표 11〉 직영지를 침입한 가축현황 (* 1304 년은 가축소유현황)

연 도 농 가	1304 년 (no. 147)	1324 년 (no. 113)	1329 년 (no. 117)	1346 년 (no. 133)	1354 년 (no. 137)	1355 년 (no. 139)	기 타
Grene 家		양, 말1		양40, 말2, 말1, 돼지, 오리	소4, 돼지5, 돼지5, 가축7	양100, 양12, 암소6, 암소6, 송아지4, 거위10	양(1294, 1310, 1313, 1326, 1333) 말(1322, 1331, 1338)
Aumoner 家	affer 1(3S.) Cow 1(4S.)				Robert Magote: 말2, 암소1, 돼지2		
Bove- cheriche 家	affer 1(2S.), Cow 1(4S.), 돼지1(6d.), 닭3(3d.)	말1		말1			말(1332, 1341)
Brian -Carter 家	affer1(4S.), cow 1(4S.), 닭4(4d.)			말1	John La- cheford: 돼지2, 돼지2	암소7, 거위6	말(1341), 돼지(1332)
Est 家	affer 1(3S.), cow 1(4S.), 어 린 소 1(2S.), 닭 3(3d.), 돼 지 새 끼 2(6d.), 어 린 돼 지 4(16d.), 양 8(5S. 4d.)	말1, 말2	말1				말(1322, 1332, 1341)
Hethe -Canon 家	affer 1(2S.), cow 1(4S.), 돼 지 1(8d.), 거 위 2(6d.), 닭3(3d.)	말2	암소1	말1			말(1322, 1332, 1333, 1341, 1353)
Heycroft 家	affer 1(3S.), cow 1(4S.), 어 린 소 1(2S.), 송아지 1(1S.), 닭5(5d.)	말2		돼 지, 말 1, 말 1, 말2		John Calwe : 말1, 말1	말(1343)

Hume -Alynote 家	affer1(3S.), cow 1(4S.), 돼지1(6d.)						말(1332)
Oldman 家	affer 1(5S.), 어린소1(3S.), 돼지2(16d.), 닭4(4d.)	양	거위	양,말2		Thomas Marshall: 양80, 말2, 말1	말(1341)
Waldru- gge 家	affer 1(2S.)	말2	돼지6, 거위	오리			돼지(1335), 거위(1331)
Waleys 家	affer 1(2S.), 돼지1(6d.), 닭3(3d.)	말1	말1, 거위2	돼지, 거위9,오리			말(1332,1341), 거위(1331)
Weylond -Mulward 家	affer 1(2S.),cow 1(4S.), 닭 3(3d.) 돼지1(6d.)		말1	말1,거위1	John Deykere: 거위12, 암소1		말(1326,1331, 1332,1335), 거위(1331), 돼지(1353)
Wyte -burdon 家	affer 1(2S.), cow 1(4S.), 닭3(3d.)	말1,양	말2,말1	말1			말(1322,1341), 양(1326,1331)
Robert Messor		황소2					말(1331), 오리(1331)
Robert Deyere		말1	오리1				말(1322,1333)
Henry Gardiner						돼지2,양20, 어린암소1	1352(황소,돼지, 거위,밭갈이 가축)
Richard Croume							1352(돼지-8d.), 1353(말1,암돼지 와돼지새끼4, 말1,말1)

〈표 12〉 돼지 방목세 납부 현황

연 도	총 액	납부자	방목두수	방목세	비고
1291~92 년(no. 61)	14 $\frac{1}{2}$ d.				
1297~98 년(no. 65)	8 $\frac{1}{2}$ d.				
1298~99 년(no. 66)	7 $\frac{1}{2}$ d.				
1318~19 년(no. 68)	7 $\frac{1}{2}$ d.				
1327~28 년(no. 69)	20 d.				
1328~29 년(no. 70)	24 d.				
1346~47 년(no. 72)	22 d.				
1347~48 년(no. 73)	27 d.				
1352년3월 (no.134)	8d.	John Grene Richard Croume Amica pekks Hugo Scheperd	4마리 2마리 1마리 1마리	4d. 2d. 1d. 1d.	자유인 Green 家 소작인
1353년1월 (no.135)	15d.	John Grene Richard Croume John Dykere Robert Magote John Lacheford	1마리	7 $\frac{1}{2}$ d. 1d. 3d. 1d. 2 $\frac{1}{2}$ d.	
1354년4월 (no.137)	12 $\frac{1}{2}$ d.	John Grene John Lacheford Robert Magote Amica Pekke	9마리 2마리 2마리(새끼) 1마리(새끼)	9d. 2d. 1d. $\frac{1}{2}$ d.	
		John Grene John Lacheford	8마리 (3마리는 숫돼지)	8d. 1d.	

<p>1354년12월 (no.138)</p>	<p>15d.</p>	<p>John Alynote Robert Magote Richard Croume Richard…… Amica Pekke Henry Gardiner</p>	<p>$\frac{1}{2}$d. $2\frac{1}{2}$d. 1d. $\frac{1}{2}$d. $\frac{1}{2}$d. 1d.</p>	<p>Grene家の 소작인</p>
<p>1356년2월 (no.140)</p>	<p>$23\frac{1}{2}$d.</p>	<p>John Grene John Lacheford John Calwe John Alynote Robert Magote Richard Marion Amica Pekke Richard Croume Henry Gardiner John Carter Roger tailor Walter Burdon</p>	<p>8d. $1\frac{1}{2}$d. 1d. $2\frac{1}{2}$d. 3d. 1d. $\frac{1}{2}$d. 1d. 3d. 1d. $\frac{1}{2}$d. $\frac{1}{2}$d.</p>	
<p>1356년11월 (no.142)</p>	<p>$20\frac{1}{2}$d.</p>	<p>John Grene John Calwe Henry Gardiner Richard Croume Roger tailor John Lacheford John Alynote Amica Pekke</p>	<p>12마리 7d. $2\frac{1}{2}$d. 1d. $\frac{1}{2}$d. $\frac{1}{2}$d. $\frac{1}{2}$d. 2d. $\frac{1}{2}$d.</p>	

		Richard Prior	$\frac{1}{2}$ d.	
		Walter Burdon	3d.	
		John Carter	$\frac{1}{2}$ d.	
		Robert Magote	2d.	
1357년12월 (no.144)	$28\frac{1}{2}$ d.	John Grene	8d.	
		John Calwe	$1\frac{1}{2}$ d.	
		T h o m a s Marshall	2d.	
		John Nappere	1d.	
		Amica Pekke	$\frac{1}{2}$ d.	
		John Lacheford	7d.	
		John Alynote	5d.	
		Robert Magote	2d.	
		Walter Burdon	1d.	
		Roger taillor	$\frac{1}{2}$ d.	

IV. 貧農의 地位

Cuxham장원의 문서는 관습지보유농민들에 비하여 빈농들에 대한 기록을 훨씬 적게 남기고 있어 그들에 대한 활동의 추적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선 그들 농가 호수에 대해서도 1330~31년과 1332~1333년의 부역에 대한 규정 문서는 빈농의 호수를 각각 11가구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⁸¹⁾ 그렇기는 하나 몇몇 다른 기록들을 통하여 대체로 7~8가구의 빈농들의 이름을 알아 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13>과 같다.

81) *Ibid.*, no.42(MM 5853 dorse), no.43(MM 5857)

〈표 13〉 빈 농

연 도	1296 년경	1296~97 년경	1329 년	1347 년 7 월	1349 년 2 월
보 유 인	no. 26 (MM 4122)	no. 27 (MM 5899)	no. 117 (MM 5911)	no. 44 (MM 5874, mem. 2)	no. 46 (MM 5874 mem. 6)
Bovetoun -Messor 家	---	---	Galfridus Bovetoun	Robert Messor	Robert Messor
Turnestone -Deyere 家	---	Richard Turnestone	---	Richard Deyere	Richard Deyere
Engleys -Aumoner 家	Matilda Engleys	Hygeleys (Thomas Clerik 의 아들)	---	Alice Aumoner	Alice Aumoner
Stoylepe -Maucorneys 家	William Stoylepe	Agnes Stoylepe	William Maucorneys	John Beche	---
Lucepret -Dryver 家	Walter Lucepret	Walter Lucepret	Henry Dryver	Maria Dryver	Henry Dryver
Jordan -carter 家	Jordan (Reginald의 아들)	Alice Jordan	Hugo Cater	---	---
Jolif -Gardiner 家	William Jolif	Matilda Jolif	Matilda Gardiner	Henry Gardiner	Henry Gardiner
Sawyere -Croume 家	Nicholas Sawyere	Nicholas Sawyere	Thomas Sawyere	Richard Croume	Richard Croume
Bovecheriche 家	---	---	Matilda Bovecheriche	---	---

빈농들의 보유지는 면적이 밝혀지지 않은 텃밭(curtillage)이 딸린 cottage 하나씩이었다. 개방경지(open-field)에는 이들의 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빈농들의 경작지는 텃밭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된다.

Cottage에 대한 빈농들의 지대는 연간 2실링~3실링이었다. 그렇지만 관습지보유농들과 같이 주부역이나 현물지대의 부담은 없었으며 연간 8~9 데나리우스로 계산되는 며칠간의 특별부역만이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⁸²⁾ 아울러 관습지보유농들이 사망시에 납부하던 사망세의

82) 빈농들의 연간 특별부역 (〈표14-1〉, 〈표14-2〉)을 〈표 4〉에 나타난 각종 부역에

지불 의무도 없었다. 이들 빈농들의 보유지와 지대및 부역에 대한 1297~98년과 1329년의 규정을 정리하면 <표14-1> <표14-2>와 같다.

<표 14-1> 빈농들의 보유지, 지대및 부역 현황(1297~98 년)

보유인	보유지	지대	추수시 특별부역	건초 작업	*기타
Richard Turnestone	1 cottage	3S.	1인2일 (영주의 식사제공)	1인1일의 목초베기 1인1일의 건초쌓기	건초쌓기후 1/2d.받음
Hugeleys	1 cottage	2S.	위 Richard와 동일	위 Richard와 동일	위 Richard와 동일
Agnes Stoylepe	1 cottage	14d.	위 Richard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Clarissia (Evelot의 아들)	1 cottage	14d.	위 Richard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Walter Lucepret	1 cottage +1 1/2 a.	3S.	위 Richard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Alice Jordan	1 cottage	2S.	위 Richard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Matilda Jolif	1 cottage	2S.	위 Richard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Nicholas Sawyer	1 cottage	2S.	1인1일(자신의경비) 1인1일(영주의 식사 제공)	위와 동일	위와 동일

<표 14-2> 빈농들의 보유지, 지대및 부역 현황(1329 년)

보유인	보유지	지대	추수시 특별부역	건초 작업	양사이전작업
Henry Dryver	1 cottage +1 1/2 a.	3S.	1인2일	① 목초작업 끝날때까지 1인의 부역 (끝난후, bus 당 8개 만든 빵 2명이 받음.) ② 1인1일의 건초쌓기(끝난후 1/2d.받음)	다른 6인의 빈농 처럼 양사이전작업 (연 2d. 받음.)

대한 가격으로 계산하면 1년 부역의 가치는 8 데나리우스~9 데나리우스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William Macorneys	1 cottage (curtillage 딸립)	2S.4d.		① 목초 작업시 2인의 부역(빵 2덩이 받음.) ② 2인 1일의 건조쌓기(1d. 받음.)	필요시 2인의 부역(2d. 받음)
Galfridus Bovetoun	1 cottage + 2 sellion의 토지	2S.	2인 1일간 (영주의 식사제공)		
Matilda Gardiner	1 cottage (curtillage 딸립)	2S.	4인의 부역 (영주의 식사제공)	① 목초작업시 1인의 부역(빵 1덩이 받음.) ② 1인 1일의 건조쌓기 (1/2d. 받음)	양사이전 부역 (2d. 받음)
Thomas Sawyer	1 cottage (cartillage 딸립)	2S.	2일 1일 (영주의 식사제공)	① 목초베기작업(빵 1덩이 받음)	양사이전부역 (2d. 받음)
Elia Bovecheriche	1 cottage	18d.			
Hugo carter	1 cottage (curtillage 딸립)	2S.		① 목초작업시 1인의 부역(빵 1덩이 받음.) ② 1인 1일의 건조쌓기(1/2d. 받음)	양사이전부역 (2d. 받음.)

그런데 빈농들의 cottage는 관습지보유농들의 보유지처럼 장원의 관습에 의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었다. 빈농들의 보유지는 평생 내지는 기껏해야 2~3세대 기간이었으며, 그것은 장원의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주와의 개별계약을 통해서였다.⁸³⁾ 따라서 cottage의 보유자들은 자주 바뀌었으며, 그때마다 <표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6 데나리우스에서 4 실링에 이르는 다양한 토지보유허가세를 지불하였다.

83) 줄고, “13~14세기 英國農民의 相續慣習”, p. 64. 참조.

〈표 15〉 빈농들의 토지보유 허가세

보유인	연도	보유지	토지보유허가세	비고(1년지대)
Bovetoun 家	1304년(no.102)	1 messuage +2buttes 토지	6S.8d.	2S.
Turnestone -deyere 家	1306~07년 1321년(no.109)	1 cottage 3 $\frac{1}{2}$ a.토지	3S. 6d.	3S(1313년) 5S.3d.
	1326년(no.114) 1329년(no.117)	1 messuage 1 messuage+3 $\frac{1}{2}$ a.토지	6S.8d.	3S. 7S.8d.
Matilda -Aumoner 家	1321년(no.109) 1330년(no.118)	1 cottage 1 cottage	18d.	2S.
Clarissia 家	1300년(no.96) 1304년(no.102)	1 cottage 1 cottage	12d. 18d.	
Stoylepe -Maucorneys 家	1306년(no.103) 1321년(no.109) 1343년(no.132)	1 cottage 1 cottage 1 cottage	18d. 18d. 24d.	8d.
Lucepret -Dryver 家	1300년(no.96) 1321년(no.109)	1 cottage 1 cottage+1 $\frac{1}{2}$ a.토지	4S. 6S.8d.	3S.
Jolif -Gardiner 家	1300년(no.96) 1341년(no.130)	1 messuage 1 cottage	3S. 12d.	
Sawyer -Croume 家	1322년(no.111) 1343년(no.132)	1cottage 1 cottage	2S. 3S.4d	2S.

이제까지 살펴본 빈농들의 보유지 규모와 지대 및 부역 그리고 토지보유권을 통하여 빈농들은 관습지보유농들에 비하여 장원의 속박은 덜 받았으나 훨씬 더 가난하였고 토지보유권도 더 불안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농들이 관습지보유농들에 비하여 훨씬 더 가난하였다는 것은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6〉으로 정리된 세금부과를 위한 동산의 소유현황 조사를 보면 과세 대상에 속하는 빈농은 1304년에 1가구, 1316~17년에 1가구 그리고 1327~28년에 1가구 뿐이

다.⁸⁴⁾ 그나마 그들의 동산 소유액은 대부분 관습지보유농민 가운데 최하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빈농들의 동산 소유액이 적었던 것으로 보아 빈농들은 대부분 1마리에 2실링~4실링의 가치가 있는 밭갈이용 말(affer)이나 우유를 짤 수 있는 암소를 보유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같은 빈농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였는가에 대해서 Cuxham 기록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직영지에 대한 경영 기록들을 통하여 이들 빈농들이 주로 직영지의 작업 가운데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에 날뎠팔이로 고용되어 생계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즉, <표 16>과 같이 정리되는, Cuxham의 농민들이 직영지에 제공한 노동력 가운데 비숙련 고용노동력은 대부분 빈농층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⁸⁵⁾

<표 16> 직영지에 제공된 농민들의 노동력

연도	1298~99년	1308~9년	1318~19년	1328~29년	1338~39년	1348~49년
1 관습지보유농민						
· 부역 일 수	1273	1325	1129 $\frac{1}{2}$	1304 $\frac{1}{2}$	1227 $\frac{1}{2}$	1052 $\frac{1}{2}$
· 부역 가치	£6, 17 S, 10 $\frac{1}{2}$ d.	£7, 3 S, 3 $\frac{1}{2}$ d.	£6, 4 S, 9 d.	£7, 2 S, 3 d.	£6, 14 S, 7 d.	£5, 17 S, 1 d.
2 비숙련 고용노동						
· 현 금	£2, 7 S, 9 $\frac{1}{4}$ d.	£2, 16 S, 2 d.	£3, 3 S, 7 d.	£2, 18 S, 5 $\frac{1}{2}$ d.	£2, 6 S, 11 $\frac{1}{2}$ d.	£2, 7 S, 6 $\frac{1}{2}$ d.

84) 각각 *Manorial Records*, no.147(MM 5905), no.149(PRO E 179/161/8 mem, 11), no. 150(PRO E 179/161/9 mem, 13)에 수록됨.

85) 비숙련 고용노동력 가운데 일부(특히 추수 시기에)가 외부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같은 가능성은 1295년에 6가구의 관습지보유농가와 2가구의 빈농들이 외부인일(extraneous) 허가 없이 머물게하여 벌금을 문 사실에서 추정된다. *Ibid.*, no.91(MM 5907 mem.3). <표 16>은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p.84~85에서 추출한 것임.

· 곡 물	1qr.1bus.2p.	5bus.	2qr.6bus.2p.	4bus.	3bus.2p.	1bus.
3. 직영지머슴노동력 · 노동일수	2340일	2080일	1993일	2080일	2080일	2005일

농 민 연 도	1349~50년	1350~51년	1353~54년	1357~58년	1358~59년	
1. 관습지보유농민 · 부역일수 · 부역가치	205 —	25 —	43 —	55 —	57 —	
2. 비숙련고용노동 · 현 금 · 곡 물	£12.12S. 8 $\frac{1}{2}$ d. —	£6.16S.4d. 5qr.6bus. 3 $\frac{1}{2}$ p.	£9.9S.3d. —	£7.11S.4 $\frac{3}{4}$ d. 19qr.2bus.	£7.10S.9 $\frac{3}{4}$ d. 9qr.1bus.1p.	
3. 직영지머슴노동력 · 노동일수	1889일	2073일	1464일	1300일	1150일	

1298~99년부터 1348~49년까지 비숙련 고용노동으로 빈농들에게 지불한 임금은 1년 평균 2파운드 13실링의 현금과 1쿼터 정도의 곡물이다. 빈농들의 가구 수를 8~11가구로 잡고 1일의 노동 가격을 <표 4>에 의하여 평균 1데나리우스로 계산하면, 빈농 1가구가 1년 동안 고용되어 직영지에서 일한 날은 약 65일~90일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농번기 등 필요한 경우에 빈농들이 거의 항상 직영지에 고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하여 빈농들의 생계가 직영지의 고용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15>로 정리된 빈농들의 토지보유허가세를 살펴보면 그들이 지불한 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농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특별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14-1> <표14-2>를 비교해 보면 1329년의 부역은 1297~98년의 부역에 대하여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부역의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⁶⁾ 이같은 사실은 토지보유허가세의 증액과 함께 인구 과잉과 토지부족이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영주들이 농민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한을 증대시키고 농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던 당시대의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⁸⁷⁾

빈농들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는 관습지보유농들의 경우처럼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는 하나 Deyere家가 다른 빈농들에 비하여 좀 형편이 나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316~17년의 경우 빈농 가운데 Robert Deyere만이 동산에 대한 유일한 과세 대상의 농가였으며, 당시 동산의 보유 가치는 관습지보유농가인 Wyte-Burdon家보다도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⁸⁸⁾ 아마도 Robert Deyere는 다른 빈농들과는 달리 밭갈이용 말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 Robert Deyere는 토지에서도 다른 빈농들보다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Robert Deyere는 <표15>로 알 수 있듯이 1321년부터 3½ 에이커의 토지를 더 보유하기 시작하고 있다.⁸⁹⁾

흑사병의 충격은 빈농층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켰다. 1352년 3월의 법정문서는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빈농이 4 가구임을 나타내고 있다.⁹⁰⁾ 그런데 다른 빈농인 Hugo Scheperd는 1353년 1월의 법정문서에 사망

86) <표14-2>에 나타나는 1329년의 부역 현황에서 일부 빈농들의 일부 부역에 대해서 기술되지 않은 것은 부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급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양사(fold) 이전의 부역에서 Henry Dryver가 ‘다른 6인의 빈농처럼’ 부역을 진다는 귀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norial Records*, no. 117(MM 5911).

87) 영국의 농민들은 13세기에 들어서서 신분적으로는 보통법(Common Law)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인구증가, 토지부족, 물가상등에 따른 영주의 수탈 강화로 법적, 경제적 지위가 매우 악화되었다. 영주권 및 농민통제의 강화와 농민들의 부담증가 및 지위악화에 대한 글들은 다음을 참조할 것. P.Vinogradoff, *Village in England: essays in English Medieval History* (London, 1892), ch.VII; R.H. Hilton, “Freedom and Villeinage in England”, *Past and Present*, No., 31(1965), pp.3~19. 12~13세기에 농민들의 신분적 지위가 악화되었다는 비노그라도프나 힐튼의 견해를 J. Hatcher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English Serfdom and Villeinage: Towards a Reassessment”, *Past and Present*, No., 90(1981)

88) *Manorial Records*, no.149(PRO E 179/161/8 mem, 11)

89) *Ibid.*, no.109(MM 5908 mem.7)

90) Henry Gardiner, Richard Croume, Richerd Magote, Alice Aumonier이다. *Ibid.*, no.134(MM 5916)

한 것으로 나타나나,⁹¹⁾ 그 후 누가 그의 cottage를 승계했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1356년 2월 이후의 장원법정문서는 Grene家가 보유하고 있던 2개의 cottage와 더불어 5개의 cottage가 계속 영주에 귀속된 상태로 남아있음을 보여주어⁹²⁾, 1358년까지 여러 cottage가 여전히 공한지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흑사병으로 인구가 격감하자 빈농들에 대한 부담은 cottage에 대한 지대 이외에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cottage에 대한 Alice Gibbes의 부담이 2실링의 지대뿐이었음을 보여주는 1357년 12월의 법정문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⁹³⁾ 그렇지만 빈농들의 부담 경감은 특별부역 며칠로 관습지보유농들의 부담 경감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것이었다. 흑사병 이후에도 빈농들의 생계는 직영지의 고용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흑사병 직후의 혼란 속에서 일부 빈농들은 1/2버게트의 토지 보유자로 계층이 상승되거나 또는 보유 조건이 더 유리했을 자유인 Grene家의 소작인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빈농 가운데 Robert Magote는 흑사병으로 사망한 Thomas Aumonier의 1/2버게트를 보유하여 관습지보유농이 되었다.⁹⁴⁾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빈농들인 Henry Gardiner와 Richard Croume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cottage를 반납하고 Grene家의 소작인으로 꽤 번성해가는 농민으로 나타나고 있다.⁹⁵⁾ 이들은 <표11>에서 알 수 있듯이 1352년과 1353년에 소, 말, 양 등의 가축이 직영지를 침입하여 벌

91) *Ibid.*, no.135(MM 5916), 그러나 언제 그가 장원에 들어왔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92) *Ibid.*, no.140(MM 5918 dorse)의 장원법정문서에서부터 마지막 법정문서인 1358년 4월의 문서(*Ibid.*, no.145:MM 5920 dorse)에 이르기까지 5개의 공한지 cottage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93) *Ibid.*, no. 144(MM 5920)

94) 1352년 3월 20일의 장원법정문서에 기록되고 있다. *Ibid.*, no. 134(MM 5916)

95)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cottage는 1352년 3월의 법정문서에서 이미 영주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당시 보유자들은 영주인 확장(warden)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있는데, 당시 두 사람은 서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들이 Grene家의 소작인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bid.*, no. 134(MM 5916)

금을 물고 있으며,⁹⁶⁾ 거의 매년 돼지방복세도 납부하고 있다.⁹⁷⁾ 그뿐만 아니라 <표10>은 이들이 흑사병 이후에 나타나는 영주 토지의 임차인으로도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13~14세기 동안 Cuxham장원의 농민들은 자유인농가 그리고 부자유농민인 관습지보유농가와 빈농의 3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자유인인 Grene家は 다른 부자유농가들에 비하여 법적인 자유신분, 많은 재산, 재산매매의 자유, 보유지에 대한 경미한 부담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월등 하였다. 그같은 Grene家の 지위는 흑사병으로 타격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흑사병 이후 Grene家は 가축사육이나 토지경영 면에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번영하고 있다.

관습지를 보유한 계층과 빈농층들은 다같이 장원에 소속된 부자유인들이었다. 두 계층은 모두 자유인인 Grene家보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열등하다는 공통점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두 계층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관습지보유농들은 직영지에 부역을 제공하였으나 빈농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토지와 가축들을 보유하여 경제적인 면에서는 훨씬 부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원관리인의 직위를 독점하여 촌락 내에서의 영향력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빈농들은 텃밭이 딸린 cottage를 보유하였을 뿐이다. 비록 이들에게 주 부역의 의무는 없었으나 생활은 훨씬 빈곤하여 직영지 등에서 날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같은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같은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관습지보유농들 사이에도 경제력과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들 가운데 특히 장원의 관리인직을 가졌거나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몇몇 농

96) *Ibid.*, no.134(MM 5916), no.135(MM 5916)

97) <표 12> 참조.

가들이 재력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앞서고 있다. 이들 일부 농민들은 흑사병 이전의 시기에서도 사적인 토지매매를 통하여 부유한 농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즉 토지매매를 통한 농민들 사이의 계층분화 현상이 흑사병 이전의 시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⁹⁸⁾ 이와 더불어 흑사병 이전의 인구과잉과 토지부족의 상황 속에서 영주권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흑사병에 의한 대대적인 인구감소는 직영지의 직접경영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나⁹⁹⁾ 반면 Cuxham장원의 부자유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존한 일부 빈농들은 관습지보유농으로 계층상승의 기회를 맞았거나 혹은 더 유리한 보유조건을 제시하는 자유인 家의 소작인이 되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관습지보유농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

98) 그러나 흑사병 이전에 나타나는 농민층의 계층분화 현상은 흑사병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흑사병 이후의 분화는 중간 보유자의 수를 감소시키며 소수의 부농에 의한 토지집중과 토지가 없는 임금노동자나 빈농으로 양극화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흑사병 이전의 분화는 가족의 cycle에 따라 보유지 규모가 변하는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인구과잉과 토지부족의 현상 속에서 각 농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조그만 토지라도 구입하려 노력하였고, 그렇게 축적된 토지는 다음 세대에 자녀들에게 child portion이나 marriage portion으로 재분배되어 촌락사회가 소수의 부유한 농민과 다수의 소보유자 및 토지없는 노동자로 지속적으로 양극화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C Howell, "Peasant Inheritance Custom in the Midlands, 1280~1700". in J. Goody, J. Thirsk and E. P. Thompson eds., *Family and Inheritance: Rural Society in Western Europe 1200~1800* (Cambridge U.P., 1976) pp.112~155 passim; Janet Williamson, "Norfolk: Thirteenth Century", pp.93~4, 100~103;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p.9 가족의 cycle에 따르는 보유지 규모의 변화에 대한 이론은 A. V. Chayanov의 글을 참조할 것. Daniel Thorner, Basile Kerblay, R. E. F. Smith eds., *A. V. Chayanov on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Illinois, 1966)

99) 1359년부터 직영지는 farmer에게 임대되었다. 최초로 남아있는 임대기록은 1361년에 기록된 7년 동안의 임대계약문서이다. 이때 farmer는 Cuxham교구 사제인 William Elham으로 나타난다. (*Manorial Records*, no.21:MM 3100). A. R. Bridbury는 1348~49년의 흑사병이 '독제보다는 하제 (more purgative than toxic)'로 작용하였으며 ("The Black Death",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ol. xxvi, no. 4 (1973), p. 591.), 그 결과 대부분의 영주들이 흑사병에서 바로 회복하여, 적어도 1375년 '첫서리 (the first frost)'가 내려 Indian Summer가 끝나고 곧바로 겨울로 바뀔 때까지 이윤회득을 지속했다고 주장한다 (Ibid, p.584). Canterbury영지 등 일부에서는 Indian summer가 13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으나 (Mavis Mate, "Agrarian Economy after the Black Death: The Manors of Cathedral Priory",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ol. xxxVII No.3 (1984), pp.352~53.), Cuxham의 기록은 흑사병 이후 Indian Summer를 맞지 못한 채 겨울로 접어든 것을 보이고 있다.

이었던 주부역이 금납화되었으며 지대도 경감되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직영지의 분할임대는 Cuxham농민들에게 자신의 보유지 이외에 다른 토지를 임대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것은 토지경영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부농층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¹⁰⁰⁾ 흑사병 직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Cuxham의 일부 부농층 형성은 그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생각된다.

100) 실제로 1380년 경부터 Cuxham농민 가운데 일부는 두번째의 1/2버게트를 경작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다.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139. 흑사병 이전인 1341년과 130여년 후인 1477년 사이에 토지소유의 변화를 통한 농민층의 계층분화및 부농층 형성의 전형적인 예는 Leicester수도원의 영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R.H. Hilt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me Leicestershire Estates in the 14th and 15th Centuries*(Oxford U.P., 1947), pp.94~105.